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0가단3897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8. 20.

판 결 선 고 2021. 9.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① 피고와 C, D 사이에 별지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28.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② 피고는 E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 접수 제316937호에 의하여 2015. 8. 28. 매매를 원인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③ 피고는 원고에게 2,65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신분 등

원고는 주식회사 F의 고문이었던 사람이고, E은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며, 피고는 E의 처(妻)이다.

나. 이 사건 계약, 조정 등

- 1) 원고와 E은 2016. 9. 30.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회계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계약서에 기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E은 위 계약서의 위임자란 ‘주식회사 G의 대표자 성명 E’이라는 취지로 인쇄된 부분 뒤에 서명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서의 수임자란 ‘주식회사 F 고문 대표자 성명 A’이라는 취지로 인쇄된 부분 뒤에 서명하였다.
- 2)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9. 10. 7.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용역대금 중 잔금 2,652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강제조정을 결정하였다(위 법원 2019머4299호).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 소유권이전등기 등

- 1) C, D은 2015.경 별지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 접수 제316937호로 ‘2015. 8. 28.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등기’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10,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1)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또는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용역대금

2,652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E은 소외 회사를 경영하면서 얻은 수익을 현금화하여 피고에게 신탁하였다. 피고는 위 자금을 원천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E은 무자력 상태에 이르렀다. E은 채무 등을 면탈하기 위하여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현금재산을 피고에게 신탁하고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매매를 체결한 후 이 사건 소유권등기를 마치도록 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3) 원고는 E의 채권자로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매매는 취소되어야 하며,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위탁자인 E에게 위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2,65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의 인정사실, 거시증거와 그 외 원고가 제출한 갑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로 E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채무 등 금전채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의 인정사실과 거시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의 위임인 및 이 사건 조정의 채무자가 ‘소외 회사’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가 E에게 어떠한 금전채권을 가진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해 살피지 않더라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소병석

[별지 1]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 등

위 임 자 (갑) : (주) 대표 수 임 자 (을) : 고문

위의 (갑)·(을) 양자는 (갑)이 의뢰한 회계 및 세무에 관한 회계자문 및 기장 업무를 수행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의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회계 및 세무 그리고 경영전반에 걸친 회계기장과 자문을 수행하고자 작성한다.

제 4 조 (회계 용역 보수)

당, 계약과 관련한 회계 용역 보수는 당초, 세무 당국 또는 (을)이 계산하고 (갑)이 인정한 국세 및 지방세, 가산금, 과태료를 합한 금액을 회계용역대상금액으로 하여, 금 50,000,000원 한다.

(단, 1. 이때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2. 회계용역 수행시 세무당국에 의하여 새로운 과세자료 적발시에는 상기의 당초 회계용역대상금액에 별도로 추가 합산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제 5 조 (회계용역 내용)

본 회계용역의 내용은 종로세무서장이 (주) 에 부과 고지한 부가가치세 총 금216,438,270원 (2011년1/2기분 부가가치세 102,828,740원, 2012년 1기분 금113,609,530원) 과 2011년 귀속분 법인/소득세 금94,558,477원과 추가 고지분 금36,771,126원으로 총347,767,873원으로 이에 대한 불복사건 처리(심판청구 및 항후 소송포함)이다.

제 6 조 (회계 용역 보수 지급)

당 계약과 관련한 회계 용역 보수는 세무당국으로부터 본 회계용역과 관련된 사무를
연결하였다는 것을 확인한 날 지급하기로 한다.

(단, 국세부과의 확정상 서류로 통지받지 못할 경우, (갑)의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위 입 자 (갑)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 호 []

상 호 : (주) []

대표자 성명 : []

수 입 자 (을)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

상 호 : (주) [] 고문 ([] 연구소 대표)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성명 : []

[별지 2]

이 사건 부동산의 표시 등

1. 토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
대 288㎡.

2. 건물:

서울특별시 동작구 .

[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

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및주택

1층 123.58㎡

2층 123.58㎡

3층 123.58㎡

지1층 123.58㎡

